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93
------------	-----

제출년월일 : 2002. 11.

제 출 자 : 김 포 시 장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개정사유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로 도시기반시설 확충등 인구급증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시민제일주의의 행정조직 개편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주요골자

- 통폐합 : 공보담당관실 + 문화체육과 ⇒ 문화공보담당관실
- 신 설 : 청소과

□ 개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말씀서 : 해당없음

신·구조문대비 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국, 담당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u>공보담당관</u> , 자치행정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3조(국, 담당관의 설치)(개정안과 같음), 문화공보담당관,	제3조(국, 담당관의 설치)(개정안과 같음)
제5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3(생략) 4. <신설> 5. <신설> 6. <신설>	제5조(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현행과 같음) 4.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5. 교육, 청소년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공보담당관)(개정안과 같음) 1~6(개정안과 같음)
제6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를 둔다. ②(생략) 1~3(생략) 4. 문화예술, 교육,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지원과, 세정과, ②(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자치행정국) ①(개정안과 같음) ②(개정안과 같음) 1~3(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 담당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u>공보담당관</u> , 자치행정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을 둔다.	제3조(국, 담당관의 설치), 문화공보담당관,
제5조(<u>공보담당관</u>)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3(생략) 4. <신설> 5. <신설> 6. <신설>	제5조(<u>문화공보담당관</u>) 문화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현행과 같음) 4.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5. 교육, 청소년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6조(자치행정국) ①자치행정국에 행정과, <u>자치지원과</u> ,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를 둔다. ②(생략) 1~3(생략) 4. 문화예술, 교육,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생략) 6(생략) 7. <신설> 8. <신설> 9. (생략) 10. 민원 및 호적, 부동산, 지적관리에 관 한 사항 11. 그 밖에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자치행정국) ①..... ②(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삭제> 5(현행과 같음) 6(현행과 같음) 7.(현행 제10호와 같음) 8.(현행 제11호와 같음) 9. (현행과 같음) 10. <삭제> 11. <삭제>
제7조(사회산업국) ①사회산업국에 지역경제 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를 둔 다.	제7조(사회산업국) ①.....환경과, 청소과, 농정과,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393
------------	-----

제출년월일 : 2002. 12.

제 출 자 : 김 포 시 장

□ 개정구분 : 부분개정

□ 수정사유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로 도시기반시설 확충등 인구급증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률 향상 및 시민제일주의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며, 동면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이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동폐합 : 공보담당관실 + 문화체육과 ⇒ 문화공보담당관실
- 신 설 : 청소과
-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의 존속시한 연장

： 2002. 12. 31 → 2004. 6. 30

□ 수정조례안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김포시조례 제 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국, 담당관 설치) 중 “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중 4호내지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계획 수립·실시
2. 시보 발행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5. 교육, 청소년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6조 (자치행정국) 제1항중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를 “자치지원과, 세정과”로 하고, 제2항중 제10호를 제7호로, 제11호를 제8호로 하며, 제4호·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사회산업국) 제1항중 “환경과, 농정과”를 “환경과, 청소과, 농정과”로 한다.

조례 제354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 부칙 제1항중 “공포한 날로”를 “2003년 1월 1일”로 하고, 제2항중 “2002년 12월 31일”을 “2004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김포시조례 제 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국, 담당관 설치) 중 “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중 4호내지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 (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보계획 수립·실시
2. 시보 발행 및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4.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5. 교육, 청소년에 관한 사항
6.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6조 (자치행정국) 제1항중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를 “자치지원과, 세정과”로 하고, 제2항중 제10호를 제7호로, 제11호를 제8호로 하며, 제4호·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사회산업국) 제1항중 “환경과, 농정과”를 “환경과, 청소과, 농정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5.(생략)</p> <p>6.(생략)</p> <p>7.<신설></p> <p>8.<신설></p> <p>9.(생략)</p> <p>10. 민원 및 호적, 부동산, 자치관리에 관한 사항</p> <p>11. 그 밖에 자치행정에 관한 사항</p>	<p>5.(현행과 같음)</p> <p>6.(현행과 같음)</p> <p>7.(현행 제10호와 같음)</p> <p>8.(현행 제11호와 같음)</p> <p>9.(현행과 같음)</p> <p>10.<삭제></p> <p>11.<삭제></p> <p>11.(개정안과 같음)</p>	<p>5.(개정안과 같음)</p> <p>6.(개정안과 같음)</p> <p>7.(개정안과 같음)</p> <p>8.(개정안과 같음)</p> <p>9.(개정안과 같음)</p> <p>10.(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사회산업국) ①사회산업국에 지역경제 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농지과를 두다.</p> <p>부 칙(2001.11.24 조례 제3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한시기구) 자치지방과의 존속시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경과조치)(생략)</p>	<p>제7조(사회산업국) ①.....환경과, 청소과, 농정과,</p> <p>제7조(사회산업국) ①(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사회산업국) ①(개정안과 같음) ②(한시기구)..... 2004년 6월 30일..... ③(개정안과 같음)</p>